

군사·경찰 옴부즈만 제도 시행추진

◇ 대통령님 지시사항('06.2.13)

- 군사·경찰 옴부즈만 제도 시행의 추진경과, 주요내용, 시행의 기대효과, 홍보계획 및 향후일정을 정리하여 보고드릴

1. 군사·경찰 전문옴부즈만 도입추진 경과

□ 군사·경찰 옴부즈만 추진경과

- '06.2.13 대통령님이 군사·경찰 옴부즈만 도입방안 검토지시(고충위 업무보고시)
- '06.5.4 군사·경찰 옴부즈만 도입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통합서면보고
- '06.6.21 1차 군사옴부즈만 T/F회의 개최
 - 고충위내에 군사소위원회 설치하여 군사옴부즈만 운영
- '06.7.6 2차 군사옴부즈만 T/F회의 개최
 - 인권위와 관할 중복시 고충위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, 예외 인정
- '06.7.7 1차 경찰옴부즈만 T/F 회의 개최
 - 해양경찰기관까지 포함한 경찰기관의 처분을 관할범위로 합의
- '06.7.20 2차 경찰옴부즈만 및 3차 군사옴부즈만 T/F회의 개최
 - 수사진행중인 사건도 경찰옴부즈만의 관할범위에 포함
 - 군사옴부즈만 관할을 영내거주 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으로 조정
- '06.8.8 고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료
- '06.9.6 고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

2. 군사·경찰 옴부즈만 시행의 주요내용

가. 조직 및 구성

□ 고충위내 군사·경찰 소위원회 신설

- 고충위 내에 기존 제1·2·3소위원회 외에 추가로 군사·경찰소위원회 설치하여 군사·경찰옴부즈만으로 운영
 - 별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설치 가능(동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1항 제4호, 5호 신설)

※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는 별첨 참조

- 동 군사·경찰소위에 기존위원(9인) 중에서 위원장, 상임위원, 비상임위원 3인 위원 선임
- 동 군사·경찰소위의 업무지원을 위해 각 소위별로 3~4개 관련 조사팀 구성(직제 개정령안 제9조의2, 제9조의3 신설)

※ '06.9.15 현재 직제 개정령(안)이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직제와 정원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

나. 관할 업무범위

군사옴부즈만

- 민원제기대상 처분기관 관련
 - 국방부와 그 산하기구(각 군 합동참모본부, 군부대 시설 포함)의 국방·병무·보훈 관련 처분으로부터 야기되는 고충민원
 - 민원신청인의 범위 관련
 - 영내거주 장병(중·소위 장교후보생, 하사 및 병)이 제기하는 군사분야 고충민원(동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1항 제4호)
- ※ 장교·준사관·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거 국방부 등에,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의해 각 군 부대(인사위원회)에 고충제기 가능하므로 군사옴부즈만 관할에서 제외

경찰옴부즈만

- 민원제기대상 처분기관 관련
 - 경찰기관(해양경찰기관 포함)의 처분과 수사 등 경찰기관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충민원
- ※ 특별사법경찰의 처분에 대하여는 기존 고충위의 소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하므로 경찰 옴부즈만의 관할에서 제외
- 민원신청인의 범위 관련
 - 일반국민 및 전투경찰 등 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된 자(전환복무자)가 제기하는 고충민원(동시행령개정안 제8조 제1항 제5호)도 포함

다. 수사진행 중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

군사옴부즈만은 불허, 경찰옴부즈만은 허용

- 경찰 옴부즈만의 조사는 사건 실체가 아닌 수사절차에 대한 것이

므로 수사진행 중인 사건도 관할대상에 포함되나, 군사옴부즈만은 군 수사권 존중하여 수사진행 중 사건은 조사 제외

라. 인권위와 관할중복의 처리

□ 군사옴부즈만

- 원칙적으로 고충위에서 처리하되 민원인이 원하거나 고충위가 인권위 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권위로 이송

□ 경찰옴부즈만

- 고충위와 인권위가 관할중복시 처리기준에 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 조정·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

※ 군사·경찰옴부즈만도 고충위 소위원회에 있으므로 그 권한과 결정의 효력은 고충위의 일반적 권한과 동일

마. 고충민원인의 신분보장과 외부접근성 보장

□ 고충제기로 인한 불이익 금지의 제도화

- 고충민원 신청으로 인해 신원공개,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 금지(동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4항 신설)

□ 외부접근성 보장

- 군인, 전환복무자의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동시행령에 의거하여 지휘계통 따르지 않고 외부에 고충민원 신청 가능(동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3항 신설)

※ **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:**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,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됨(동시행령 개정 후 추후 개정 예정)

3. 군사·경찰 옴부즈만 도입의 기대효과

□ 군사·경찰 고충민원의 활성화로 국가 옴부즈만의 실질적 취지 실현

- 군사·경찰 등 고충민원의 취약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범위 확대

□ 고충제기의 외부접근성 확보로 군·경찰의 대국민 신뢰성 제고

- 외부기관에 의한 공정한 고충처리로 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

4. 홍보방안(고충위·군·경찰 홍보협의회 주관)

□ 일반국민 대상

- '06.10월 말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,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실시
 - 고충위(위원장), 경찰청(차장), 국방부(차관) 합동으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 룸에서 도입취지와 주요내용 등 홍보
- '06.11.~'07.3 인쇄물, 일간신문(전문가기고, 정책광고), 방송(K-TV), 온라인(온라인신문, 정책블로그 운영)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동시다발적 홍보 실시

□ 군·경찰 내부구성원 대상

- 인쇄물 배포(리플릿), 자체 방송(국군방송, 경찰청 인터넷방송), 자체 일간지(국방일보), 기관 홈페이지,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군사·경찰 업무즈만 취지 및 이용방법 등 소개

5. 향후 추진계획

□ 9월 말까지 직제령개정(안) 행자부 협의완료

- 9월 3주 시행령개정(안) 법제처·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

□ 10월 2주까지 시행령개정(안) 차관회의 심의 통과

- 10월 2주 직제령개정(안) 기획예산처 협의 완료
- 10월 2주 고충위 인력채용 계획 확정

□ 10월 4주까지 시행령개정(안) 국무회의 심의통과

- 10월 1주 예비비 산정
- 10월 3주 직제령개정(안) 법제처 심사 통과

□ 11월 말까지 인력채용절차 완료 후 군사·경찰 업무즈만 출범

- 11월 1주 직제령개정(안) 차관회의·국무회의 심의 통과
- 11월 3주 예비비 기획예산처와 협의 완료

<별첨>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신·구 조문대비표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소위원회)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8조(소위원회)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충민원 중 행정자치, 교육, 문화, 복지, 노동, 환경 등 일반행정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소위원회 2. 고충민원 중 농림, 해양, 재정, 세무 등 사회·경제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소위원회 3. 고충민원 중 주택, 건축, 도시계획, 도로 등 건설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소위원회 4. 고충민원 중 국방, 병무, 보훈관련 분야 고충민원과 영내거주 장병이 제기하는 군사분야 고충민원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소위원회 5. 경찰기관(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)의 처분, 수사등 경찰기관 공무원의 행위·행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충민원과 전투경찰 등 병역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의해 전환복무된

② (생략)

③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분장 업무를 지정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9조(회의의 공개 등) ①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11조(자문기구) ① (생략)

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노동, 환경, 민·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4조(공무원 등의 파견)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근무하

자(이하 “전환복무자”라 한다)가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소위원회

② (현행과 같음)

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위원회의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회의의 공개 등) ①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국방·안보·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자문기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복지, 노동, 환경, 산업, 민·형사, 건축, 도시, 도로, 군사, 경찰.-----

-----.

제14조(공무원 등의 파견) -----

는 공무원 또는 직원(이하 “파견직원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.

1. 6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경력
력이 5년 이상인 자

2. ~ 4. (생략)

제19조(고충민원의 신청) ① (생략)

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제21조(대리인의 허가) ①신청인이 법 제28조제3항제5호의 규

-----.

1. 6급 이하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
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)
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고충민원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영내거주 장병 및 전환복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속, 계급, 군번

③영내거주 장병 및 전환복무자의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누구든지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신원공개,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내거주 장병 또는 전환복무자가 제출한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타인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한 징계 또는 민·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21조(대리인의 허가) ①-----

(2006.9.19, 서면보고자료, 민원·제도혁신비서관실)

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수사 등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실지조사의 일시·장소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